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A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on the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윤준웅(Yun, Jun Ung)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주저자)

이춘수(Lee, Chun Su)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원산지검증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 | 참고문헌 |
| III. 유형별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사례 | ABSTRACT |
| IV. 사례분석 및 시사점 | |

국문초록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 서, 원산지 검증이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 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 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 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 방 식의 고찰을 통하여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 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 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 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요인, 원산지검증, 원산지결정위반사례

* 본 논문은 윤준웅의 학위논문의 일부분 임.

I. 서론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237개 나라 중 수출규모 7위(한국무역협회 2014년 통계 자료)의 세계 10대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위상은 자원 빈곤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과 더불어 정부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AT)의 활발한 협상 체결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아세안, EU 등의 거대 공동체를 포함하여 2012년에는 미국, 2014년에는 호주, 2015년 1월에는 캐나다와 FTA 발효를 성사시켰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배명렬, 박천일(2014)은 한국무역업계의 FTA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창숙, 김종철(2013)은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창봉, 임덕환(2011)은 원산지 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업체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김창봉, 현화정(2014)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및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이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2010년 이후 이영수, 권순국(2011), 조미진, 김민성(2011), 장근호, 정재완(2012), 김희열, 박근재(2012), 김만길, 정재완(2013) 등은 원산지 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원산지 검증이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대표적 두 국가의 원산지 검증의 주요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관세청 및 기타 국내외 공식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부유형별 원산지 검증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원산지검증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조미진, 김민성(2011), 전준수, 조준영(2012), 김희열, 광근재(2012), 장근호, 정재환(2012), 장근호(2103)의 연구에 따르면 원산지검증은 수출입자가 신고한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원산지검증 방식에는 직접검증과 간접검증방식 혹은 혼합방식이 있으며, 한·미 FTA 원산지 검증방식은 NAFTA 유형모델을 따르고 있다. 미국의 원산지 검증 대상은 미 세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큰 PTI(Priority Trade Issues)로 자동차, 섬유, 의류 철강 전자, 농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EU의 경우 미국과 달리 다수의 FTA에서 간접검증 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필요할 경우 수입국 조사과정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의 약 0.5%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 국가별 검증방식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아세안	인도	EFTA	EU
검증 방식	직접검증		직접 (섬유·간접)	직접 + 간접	혼합방식		간접	
검증 주체			수입국세관					
					수입 + 수출국 세관	(예외:수입국)	(수입국참관가능)	

원산지검증에 대한 일반 규정은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으며¹⁾ 이를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요약하였다. 이영수, 권순국(2011), 박현희(2012)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전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거나,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변형기준으로 대별되며, 실질변형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 기준으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 한·미 협정문 제6장 제1절 제6.1조~제6.18 및 한·EU 협정문 제5부 및 제6부

<표 2>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문 비교

구분		한·미 FTA	한·EU FTA
발효일자		2012.3.1 발효	2011.7.1 발효
협정국		미국	EU(27개국)
역외가공 인정여부		불인정	불인정
운송요건		*.물품이수출당사국을출발하여제3국의 거치지아니하고수입당사국으로운송되어야함.(원칙) *.비당사국경유시경유국세관통제하에있었음을입증해야하며하여,재선적,상품보존위한작업등이외의추가작업이없어야함.	*.원산지제품이라해도양당사간직접적으로운송되어야협정관세적용 *.협정당사국이외지역경유시자유로운유통을이해반출되지않아야하며하역,재선적또는양호한상태로무품을보존하기위한공정을수행한경우만인정
원산지 결정기준	부가가치 기준	상품가격: FOB RC법: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 공제법(55%), 집적법(35%), 순원가법(35%)-자동차 한정 적용	상품가격: 공장도가격 MC법: 역외 부가가치 비율 일정수준 이하 (비원산지 재료비/공장도가격)*100
		미소기준	가격기준: 일반품목 10% 농수산물 적용 제외 원칙
	섬유류 중량기준 7%		섬유류 중량기준 8-30% (일부는 가격기준)
	원산지 기준	화학제품 주요공정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모두 인정 * 화학반응, 정제공정 또는 블렌딩 공정	세번변경기준(CTH)
원산지 증명방식	증명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인증수출자 한정) * 단,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 외에도 C/O 발급 가능
	증명서식	지정서식 없음 필수사항 기재한 권고서식 마련	송품장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
	사용언어	영어, 국어	협정 각 당사자 언어
	유효기간	4년	1년
	분할사용	12월 이내 포괄증명시 가능	1회 사용원칙
원산지 검증	검증방법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검증)	간접검증
	검증주체	수입국(섬유·의류는 수출국)	수출국(수입국 참관)
	회신기한	(섬유·의류)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섬유·의류 외)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연기신청 최대 60일)	요청일로부터 10개월

<표 2>와 같이 직·간접 검증 대표적 국가의 협정문을 통하여 주요 검증 요소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EU국의 기관인증수출자에 의한 수출방식이 아닌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 주요 검증 유형 중 거래 당사자 위반 노출 위험이 크다. 또한 간접검증 대비 짧은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원산지 증명 위반 위험 증대, 기업 기밀자료의 직접적 제출 거부에 따른 원산지 증명 위반 증대 등 수출기업에 있어 간접 검증 대비 직접검증은 증명서류 요건 위반에 취약성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교역량이 많은 한·EFTA(2006.9월 발효), 한·ASEAN(2007.6월 발효), 한·EU(2011년 7월), 한·미(2012년 3월)에 대한 FTA 원산지 검증 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4건에서 2012년 229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212건 8억 7600만원에 그쳤던 원산지 검증관련 추정 건수가 2013년 459건 104억 1200만원, 2014년 8월 기준 499건 175억 6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EU와 미국의 원산지 검증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주간무역, 2013.10.4; 뉴시스, 2014.10.21.).

<표 3> 부산세관 원산지 검증 실적(건, 백만원)

협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칠레	-	-	19	164	-	-	-	-
한·EFTA	23	29	999	51	14	17	-	-
한·아세안	137	768	6	25	-	-	-	-
한·인도	-	-	27	173	-	-	-	-
한·EU	-	-	618	1810	365	9,765	240	3,703
한·미	-	-	2	7	80	630	131	13,630
APTA	52	79	-	-	-	-	128	236
총계	212	876	1,671	2,230	459	10,412	499	17,569

<표 4> 위반유형별 추징현황(건, 백만원)

협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품목세율적용오류	137	768	551	175	63	4,084	162	548
증명서류요건위반	52	79	73	1,659	270	4,660	225	565
직접운송요건위반	11	22	-	-	-	-	-	-
원산지결정기준위반	12	7	1,045	389	123	1,604	107	16,326
기타	-	-	2	7	3	64	5	130
총계	212	876	1,671	2,230	459	10,412	499	17,569

자료 : 뉴시스, “부산세관, FTA원산지 표기위반 추징액 급증”, 2014.10.21.

3. 선행연구

기존 선행연구에서 FTA 원산지 규정 및 결정기준, 원산지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선행연구로, 권순국(2011)은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 FTA 협정 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상이하며, 기업의 원산지검증에 관한 인식이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산지 증명방식의 간소화와 원산지 사전검증제도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Changa and Xiao(2015)의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이 시장규모가 다른 국가들 간에 부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하였다. 원산지규정이 덜 엄격하고 시장규모의 비대칭성이 조절효과를 보인다면 세계적 부는 관세동맹보다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더 클 것이라고 검증하였다. Paul Brenton, Manchin(2002)은 EU국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함이 개발도상국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어렵게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원산지 규정의 엄격함을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태인, 김석태(2012)는 실제 업체의 수출 인증 사례를 바탕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원산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현희(2012)는 각각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의 차이 때문에 FTA에 따른 실익이 반감되는 현상에 대하여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고 향후 한국이 준비하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원산지규정과 활용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로 조미신, 안경애(2011)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

로 원산지규정과 활용 측면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관심 등이 매우 저조하며, 이는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국형 원산지규정의 방향 정립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무한(2010)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Kawai and Wignaraja (2009)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첫째, 정보의 부족, 낮은 특혜관세수준, 추가비용의 발생, 수출가공공단의 활용이 더 유리, 엄격한 원산지 기준, 비관세장벽, 기업정보 유출우려 순으로 지적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이 활용률을 높이려면 앞서 지적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Ⅲ. 유형별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사례

원산지 결정위반사례를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필수원칙 위반유형, 일반적 기준 위반유형, 보충적 기준(특례기준) 위반 유형, 거래당사자 및 원산지증명 위반 유형으로 크게 4개 유형으로 하고, 이를 다시 각 항목별로 세분화한 사례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의 일부 위반 유형 항목에 대한 접근 연구에서 전체 세부유형으로 확대 연구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둔 것이다. 현시점의 사례 수집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주요 사례분석 국가는 대표적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NAFTA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으며, 간접검증 방식의 국가에서는 EU 및 EFTA 사례를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위반 유형 분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학문적으로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1. 필수원칙 위반유형

1) 직접운송원칙 위반: 스페인산 와인²⁾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31부터 2008년 9월 27일까지(입항기준) 스페인 등의 7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번호 *****-08*****U호(2008.8.22)등

2) 관세청 관심 제2012-33호

으로 수입통관을 하였다. -중략-

쟁점 사항은 한·EU FTA 원산지 의장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 여부이다.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 물품은 유럽연합(EU)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되어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어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홍콩으로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미 협정과 비교해 보면 한·EU의 경우 직접운송원칙³⁾을 명시하고 제3국 허용작업 외 제한조건으로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 화물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한·미 협정문에는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지 않고, 한·미 협정문에서는 제 3국 허용작업 외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⁴⁾

2) 역내가공원칙: 신발 사례⁵⁾

한국의 S사는 미국의 N사로부터 신발(HS CODE : 6404.19)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MFN 세율 13%에서 FTA 0%의 관세율로 수입 통관하였다. 한국 세관은 미국의 신발 제조회사가 미국 이외에 중국 베트남 등지에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항을 염두 해 두고 수입된 신발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에 착수하였다.

주요 검증 사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미국 내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수입자 및 수출자가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다 이 사례는 수출자의 신발이 수출지역의 역내에서 가공되어 수출되어야만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협정 적용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주요 검증내용으로 조사한 사례이다. 이 경우 수출자가 입증자료 미 제출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사례이나, 섬유, 신발 등은 역내가공원칙에 위배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원산지 충족여부를 검증하기에 각 협정별로 역내가공원칙 기준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EU⁶⁾, 한·미⁷⁾ FTA 협

3) 한·EU 협정문 제13조 직접운송,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하고 하역 재 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4) 한·미 FTA 협정문 제6.13조 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재 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에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5) 관세청 포털 사이트, 한·미 FTA 검증사례 3

정문 내 역내 생산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한·EU 및 EFTA는 역외 가공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EU FTA에서는 역외가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확장된 개념에서 현재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EFTA(허용지역 제한 없음)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도 일정 가공비 40% 이하를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반면 EU 및 미국의 경우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개성공단 역외가공이 허용될 경우 현재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EU 국가에 대한 수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역내가공 원칙: Pipe Fitting 류⁸⁾

한국의 P사는 미국의 F사로부터 Pipe Fitting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세관 측이 수입부자재의 미국 수출자 F사가 자체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정도, 원재료의 구매내역 등 협력업체 납품내역자료 및 수탁가공 거래계약 관련 상세내역을 검증한 결과 미국 수출자 F사의 경우 원부자재 생산업체가 아니며, 인보이스에 협력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어 조사한 결과, 제3국 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원상태로 한국 P사로 수출하였다. 인보이스 상 물품의 생산지가 여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국이라고 원산지 신고하여 0%의 특혜관세를 배제 받은 사례로 한 국가 내에서 가공을 거쳐야 하는 역내가공원칙 조항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2. 일반적 기준 위반유형

1) 완전생산기준: 노르웨이 신선연어⁹⁾

완전생산기준/거래당사자원칙/허위원산지 신고 청구법인은 2006년 9월 4일부터 2007년 5월 10일까지 노르웨이로부터 신선 연어를 수입하면서 한·E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2***-06-4****32의 48회 수입 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중략- 이 사례는

- 6) 한·EU 협정문 역내생산원칙 제 2조 원산지 제품,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12조 영역원칙에 명시하고 있다.
- 7) 한·미 협정문 역내생산 원칙은 제6.1조 원산지 상품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 및 부속서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 8) FTA 포털, 한·미 FTA 검증사례 5
- 9) 관세청 적부심사 제2007-129호

제3국 물품 우회수입 협의가 검증배경이 된 사례로 노르웨이 세관 검증결과 권한이 없는 미국 알래스카 수출자가 한·E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여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한 사례이다. 이는 제3국 수출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및 사후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 제출로 종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검증 과정 중 들어난 원산지 신고서의 허위 작성 등 3개 항목에 대한 판정 사례이다. 완전생산기준은 한·EU 협정문 제4조10) 및 한·미 협정문 제6.1조11)에서 명시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농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은 농수산물은 수출 비중이 크지 않으면서도 민감한 항목이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실질적 변형 기준(세번변경기준): 스위스 금괴 사례¹²⁾

관세청에 따르면 2006.9.1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스위스 산 금괴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해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스위스 금괴의 생산현황 및 국제거래 등을 정밀 분석하고 수입량이 많은 국내 수입자를 조사해 왔으며,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되었다. 한·EFTA FTA 협정상 금괴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금괴(HS Code 7108.12)와 다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금괴 제조, 금광석(HS Code 2616.90)으로 금괴(HS Code 7108.12)를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하며, 저 순도 금괴로 고순도 금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료와 제품 모두 HS Code가 7108.12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하게 된다. 본 사례는 원래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기본 세율 3%에서 0%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해서

- 10) 한·EU 협정문 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1. 제2조 가호의 목적상, 다음의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다.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당사자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이하 “마 ~ 카” 항목 2. 제1항 바호 “당사자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및 사호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에서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 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회사,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 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 11) 한·미 협정문 제6.1조 원산지 상품 조항에서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의 경우,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라 명시하고 있다.
- 12) 관세청 보도자료, “1800억 원대 원산지 위반 스위스 산 금괴 적발”, 2008.4.14.

는 HS 6단위 수준에서 품목분류번호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HS 7108.12)를 생산해야 스위스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저 순도 금괴를 수입(HS 7108)하거나, 스크랩 금괴를 수입(HS 7112)하여 정련가공을 거쳐 고 순도 금괴가공을 마치고(7108) 이를 우리나라로 수출하였다. 하지만 검증결과 일부 수입 원재료의 6단위 세번변경 미 발생으로 인하여 원산지는 스위스 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세관은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 14개 수입자에게 175억 원을 추징한 사례이다.

3) 가치포함 기준(부가가치기준): 13) looseleaf binder 사례¹⁴⁾

캐나다에 소재한 Z사는 looseleaf binder를 미국의 고객에게 판매하며, Z사는 A~E모델(입의 모델명칭)에 사용되어지는 부재료들의 단가를 미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Z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A~E모델에 사용되어지는 looseleaf binder에 사용되어지는 부재료의 비원산지 비율이 대략 A타입은 16.1%, B타입은 26.6%, C타입은 24.1%, D타입은 23.9%, E타입은 31.6%로 나타났다. -중략-

이 사건의 쟁점은 NA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순원가법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입증 이 되지 않은 Z사의 자료를 바탕으로는 5가지 모델은 역내가치 50%를 초과하여 NAFTA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Z사가 제공한 자료가 19 C.F.R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본 판정은 수정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 부가가치법은 앞서 언급한 직접운송원칙, 역내가공, 충분가공,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관계 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품 BOM 리스트의 제조원가 명세서 산정시 주요 생산품의 출고가에 영향력이 큰 입고 제품의 단가 변동 내역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에 업체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4) 가공공정기준: 남성용 의류¹⁵⁾

한국의 C사는 남성용 의류(HS CODE : 6201.93)를 스위스에 있는 수입업체 S사로 수출하

13) 부가가치법과 관련하여 MC 방식은 공장도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한·EFTA/한·EU/한·티키 FTA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율(MC)= (비원산지 재료/공장도가격)*100, 직접법(BU)는 부가가치비율(RVC)=(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100, 공제법(BD)는 부가가치비율(RVC)={(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100, 한·미 FTA에서 자동차 상품에 한정하여 직접법 또는 공제법과 함께 선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순원가법을 사용한다. 순원가법 산식은 역내부가가치비율=(순원가(NC)-비원산지재료가치(VNM)/순원가(NC))*100로 표기하며, 순원가는 총비용(재료비, 직접노무비 등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비용)-공제비용(관측, 마케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 포장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이다.

14) 미국세관, HQ 545693

15) FTA 포털, 한·EU FTA 검증사례 수출 2

였다. 스위스 세관은 한국산이라 표기된 원산지신고서에 선적지가 중국 대련으로 기재되어 직접운송 위반을 의심하여 직접 운송 원칙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하였다. -중략-

본 사례는 중국현지 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 후 한국 본사가 주문을 받아 중국 생산 공장에서 제품 생산 후 EU국으로 바로 수출하여 이를 수출자가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 한 위반 사례이다. 로 한·EU FTA 협정문 제13조 직접운송 원칙에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 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품목별기준의 한 종류로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제단, 봉제공정, YARN RORWARD 기준이 그 예이며, 특히 한·미 FTA에서는 석유 또는 화학제품에는 특정공정이 수행되면 세번 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 규정된 경우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 가치기준의 동시 충족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¹⁶⁾ 이석동, 이춘수(2015)는 기존 한·미 FTA 체결 시 섬유산업이 가장 큰 수혜품목의 전망과 달리 한·미FTA에 의한 섬유산업의 혜택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섬유의 공정은 섬유원료(fiber)/방직의 공정을 거쳐 ->원사(yarn)/제직 편직 공정을 거쳐 직물(fabric)/제단 봉제의 공정을 거쳐 의류(apparel)가 된다. 현재 한국의 모든 의류의 제작과정에서 위의 규정과 같은 모든 공정을 자국에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원사(yarn)는 중국이나 기타 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에 있다. 이를 협정국간 체결 협정을 통한 우회 및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하여 자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보충적 기준 위반유형

보충적 기준 위반 유형에는 부속품, 예비품, 미소기준, 누적기준, 중간재료, 예비품, 대체가능 물품, 간접재료, 용기 및 포장, 세트 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 유형 등이 있다. 부속품 및 예비품의 경우를 보면 한·미 FTA 협정문 제6.8조 부속품 및 예비부품 및 공구 조항에서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16) FTA 포털 가공공정기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의 결정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 1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이는 자동차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시 차량 내 필수 공구류 및 스페어타이어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하나 주요 위반 사례의 수집 한계성으로 인하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한다.

4. 거래 당사자 및 원산지증명 위반유형: 원산지 신고서 오류

1) 가전용 전자제품¹⁷⁾

거래 당사자 위반(EU 수입) B사는 가전용 전자제품(HS CODE : 8510.90)을 독일 Q사로부터 수입하면서 한·EU 협정 세율 적용을 받아 기존 8%에서 0%의 관세율로 수입 통관하였다. 한국 세관은 적출국가와 원산지국가가 상이 하며 제 3자가 송품장을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 독일세관으로 검증을 요청하였다. 검증 사항은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직접운송여부, EU 국내 실제 생산여부이다. 검증 결과 본사 소재 스위스에서 원 송품장을 싱가포르 지사 앞으로 발행했으며,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수입자 앞으로 제 3자 송품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대상 물품은 독일공장에서 한국으로 운송하였다. 검증결과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인 스위스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여 독일에 간접 검증 요청할 필요 없이 수입자 조사 후 특혜 관세를 배제하였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독일 ZF사의 AXLE, 독일 헬라램프 류 등의 자동차 부품들은 유럽현지의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신속한 물류운송을 위하여 세계 각 거점지역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주요 아시아 거점 물류센터의 한 곳이다. 원부자재의 수출입에 있어 직접배송원칙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기업체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이러한 제품생산국과 제품 배송지역의 일치성 여부를 사전 확인여부이다.

17) FTA 포털, 한·EU FTA 검증사례 수입 1

2) PET RESIN¹⁸⁾

한국의 K사는 PET RESIN(HS CODE : 3907.60)을 루마니아 S사로 기존 6.5%의 세율을 한·EU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3.2% 수출하였다. 루마니아 세관은 랜덤 선정 방식에 의해 B/L에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진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세관 측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한국 소재 K사와 루마니아 S사와의 거래에서 루마니아 세관 당국은 중개업자인 C사가 발행한 3국 송장과 B/L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다. 수출자는 중개업자 C사의 요청에 따라 모든 상업서류(송품장, PACKING LIST, B/L)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였으며, B/L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아닌 선사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효력 없는 원산지 신고서로 루마니아 관세 당국에 통지되었다.

3) P 자동차 부품사례¹⁹⁾

한국의 T사는 미국의 W사로부터 자동차 부분품(HS CODE : 7009.10)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8%의 세율에서 0%의 세율로 수입하였다. 한국세관 측에서는 수출자가 작성한 C/O를 수입자가 임의로 변경한 정황을 입수하여 검증에 착수,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실제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수출자가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수출자 발행 C/O의 기재 내용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내용 확인이 어렵자 수입자가 C/O를 임의로 재작성한 사례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허위 C/O작성에 대한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이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례이다.

4) 인증 수출자 번호 오류 사례²⁰⁾

한 EU FTA협정에서는 거래대상 물품이 6천 유로를 초과할 경우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기존에 유럽연합(EU) 상호 간에 통용되던 EORI번호(우리나라 통관업체 고유번호와 비슷) 등은 한·EU 발효 시점에 맞춰 인증수출자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EU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번호가 아닌 EORI번호, VAT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 작성하거나 ~~및~~ 공지된 인증번호체계에 기재된 예시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하고 수입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 건은 원산지검증 결과 EU

18) FTA 포털, 한·EU FTA 검증사례 수출 3

19) FTA 포털, 한·미 FTA 검증사례 1

20) FTA 포털, 한·EU FTA 검증사례 수입 2

수출자가 제공하는 번호가 인증 수출자 번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된 사례이다.

5) 광개시제²¹⁾

청구인은 2006년 9월 7일 수입신고서 번호 ***-**-***GH 등 3건을 통해 광개시제(규격 IRGACURE)을 수입하면서 한·EFTA 협정세율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 신고하였고 처분청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중략- 본 사례는 수입신고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 후 사후 심사과정에서 그 하자를 지적받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사례이다. FTA 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부속서 I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는 이러한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사례분석 및 시사점

앞서 제3장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별 위반 사례를 FTA 협정문 원산지기준과의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 5>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요인의 유형별 문제점

항목		사례	문제점
필수 원칙	직접운송	스페인 와인	일부 제 3국 반출 후 재반입
	역내가공	미국 신발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체
	역내 가공	미국 PIPE FITTING	역외에서 생산

21) 관세청, 적부심사 제2008-005호, 광개시제(Photo initiator)는 UV코팅 및 각 종 전자재료 산업에 경화제로 사용 되는 소재이다.

항목		사례	문제점	
일반적 기준	완전생산기준	노르웨이 신선연어	발급권한이 없는 제 3자에 의한 원산지 확인서 발행	
	실질적 변형 기준	세번변경기준	스위스 금괴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분/유효기간내 원산지 증명자료 미제출
		가치포함기준 (부가가치기준)	IOOSELEAF BINDER	공식적인 회계정보 미제공
		공정기준	남성용 의류	섭유의 경우 자국 내 가공조건의 철지한 원산지 증명자료 사전확보필요
거래당사자 위반		독일 전자제품	비당사국 발행	
		한국 PETRESIN	효력 없는 원산지 신고서/선사 CO작성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자 임의 C/O 작성	
원산지 증명 위반		인증수출자 오류	수출자 서류작성 오류	
		EFTA 광개시제	유효하지 않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신발	검증 요청자료 미제출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요인을 크게 4개의 유형 필수원칙 위반, 일반적 기준 위반, 보충적 기준 위반 유형, 거래 당사자 위반 및 원산지 증명 위반으로 분류하여 <표 5>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보충적 기준 위반 유형은 FTA 활용적 부분으로 위반사례의 조사 한계점으로 인하여 이론적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음을 밝혀둔다.

필수 원칙의 위반사례는 대체적으로 FTA 협정국가의 협정문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 기준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FTA 특혜 관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반 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통계자료상 한국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1.화학(HS.CODE:2710), 반도체(8542), 자동차(8703), 선박(8901), LCD 액정 소자(9013)로 나타났다.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한·미 FTA와 한·EU FTA협정문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직접검증방식의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EU국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에 의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출기업에 있어 EU국에 비해 미국으로 수출시 FTA 특혜관세 적용이 용이하며, 수입국 바이어에게 신속하게 협정 관세를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혜관세 적용의 수월함이 수출기업에 있어 수입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수출 5대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순위가법을 선택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보다 용이하나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진 회계 관행에 따라 생산정보가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순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업정보가 누출될 수 있기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 세관에서 한국 세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업체에게로 기한 내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로 한다. 거래당사자 위반 사례나 원산지증명 위반 사례의 경우, 위반유형별 추징현황과 함께 비교 분석하면 2014년 8월 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요건 위반이 225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관인증수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간접검증 국가인 EU국가로의 수출대비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직접검증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류 요건 위반에 대한 취약성이 높음으로 이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기업의 내부적 대응방안과 정부의 국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배제한 정부의 내부 환경요소를 중점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미 원산지검증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부의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는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스파게티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의 일원화 및 원산지 증명방식의 간소화, 한국형 원산지 규정 확립 등은 정부 단독의 정책적 노력으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정부의 내부 환경 요소적 대응방안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유형의 필수 원칙, 일반적 기준, 보충적 기준, 거래당사자 위반, 원산지 증명 위반 중 일반적 기준의 세부항목에 속하는 부가가치 기준 등은 향후 사후검증을 대비한 관련 증빙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기업 입장에서 단기 간의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직접검증을 하는 미 세관의 경우 간접검증 대비 최대 75일 이내 회신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체계적 사전 준비가 필요로 한다. 이에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방안모색이다. 주요 FTA 원산지 대응 센터인 관세청, 무역협회 외에 주요지역 산업군 별 민간 합동 사후검증 대응 센터 설립 추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군별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건강, 화학물질과 관련된 제품군의 사후검증대응 센터는 뉴욕 설립(2011.10)하였고, 전자제품과 관련된 제품군의 사후검증대응 센터는 L.A/long beach(2011.10)에 자동차와 항공과 관련된 업군의 사후검증 대응센터를 디트로이트(2012.9)에 설립한 사례가 있다.

둘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정부 연계 기업체 활용가능 오픈소스 타입 제공을 위한 민관 합동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다. 기업체에서 보다 신속한 사후 검증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원산지 관련 자료들의 전산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증빙 서류 미비로 인한 특혜 관세 배제 현상은 현저히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이나 소기업을 위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정부의 관세청 FTA-PASS 및 한국무역협회의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등을 통하여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단일 제품 및 소품종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개발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복잡한 경우 현재 시스템 체계로는 기업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없어 대기업에서는 자체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업 자체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업 부담이 높아 정부에서는 포괄적으로 정부가 개발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기업체가 정부가 개발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자신의 기업 환경에 맞게끔 수정 보완 가능하게끔 오픈 소스로 관세청에 등록된 한국 국적의 기업체에 한해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활용 방안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업 간 거래명세서를 교환하고 있다. 판매하는 제품의 제품명 및 규격 정보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에 표기되며, 향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 판매제품의 국산 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보를 함께 기재한다면 원산지 검증에 있어 자국산 증명에 손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 기준 이외의 필수 원칙, 보충적 기준, 거래당사자 위반, 원산지 증명 위반은 원산지 전담인력의 부재로부터 신속한 사후검증 대응에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원산지 증명의 자율발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거래당사자 위반 및 원산지 증명 위반 요인이 EU국 대비 수출기업 입장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첫째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기업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확대 적용 방안이다.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의 고용 장려를 위하여, 고용 인력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전담 전문 인력의 고용 시 고용촉진 장려금의 확대 적용하여 기업에서는 원산지 관리 전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부측면에서는 기업 고용을 장려하여 기존 기업 고용촉진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찾아가는 원산지 전문가 그룹의 운영확대 방안이다. 현재 대부분의 원산지 관련 교육이 특정 기관에서의 집합교육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교육훈련을 보낼 여유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합하는 원산지 교육정책이 필요로 할 것이다.

기업측면에서 직접검증을 채택한 미국으로 수출시 사후검증 부분에서 기업 현실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거래당사자 위반 및 원산지 증명위반에 대한 대응책으로 첫째 기업 내 원산지 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원산지 검증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자재수불을 담당

하는 자재부, 자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부, 그리고 경리부등 회사 조직 내 모든 부서의 관심과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입 원재료의 공동 구매를 통한 수입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동일 원재료의 통합 구매를 통한 원산지 정보 관리를 하여 상호 원산지 검증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 통합 대응한다면 대기업 못지않은 정보력과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서브시스템 개발 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

기업측면에서 원산지 결정위반 요인 중 일반적 기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수출품목에 대한 제품개발에 있어 원산지 확인을 고려한 수출전략형 제품 개발의 인식 전환방안이다. 즉 제품개발에서부터 원스톱 원산지 인증 기획을 패키지로 관리하는 경영관리 기법의 도입을 의미한다. 대체로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출시 후 원산지 증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때 이미 바이어에 의한 오더 접수 및 제품 생산 납기내 납품 이러한 패턴의 연속일 경우 결국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한 미국의 경우 수출기업에 입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원산지 검증 위반 요인의 대한 대응이 필요 하다.

V. 결 론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었으며, 다음해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수출기업에서 FTA의 발효는 곧 FTA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초기 인식되었다. 또한 FTA의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성공적 FTA의 활용이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간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EU의 경우 2012년 이후 위반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3년 80건에서 2014년 131건으로 큰 폭으로 위반건수가 증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가 예상되어 수출기업입장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미 세관의 경우 섬유를 제외하고 직접검증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기업으로의 직접적 요청자료 요구 및 이에 대한 수출기업으로의 대응 부족으로 인하여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직접검증의 경우 한국세관과

미세관의 공식적 위반업체의 정보 공유 없이는 위반 건에 대한 파악이 힘든 상황에 있다.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향후 기업 및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인에 대한 세부항목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원산지 위반 요인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간접검증 주요 차이점과 비교를 통한 정부측면과 기업측면에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측면의 대응방안은 외부 환경요소를 배제한 내부환경 요소측면에 중점을 두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기업 대응방안은 기업현장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으로, 원산지 검증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도 사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최근의 주요 이슈가 되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지 못 하였다. 특히 미국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기업체에게로 직접 검증의 방식으로 인하여, 정확한 원산지 검증 진행사항에 대한 통계자료의 파악 및 최근의 검증 위반 건수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취약요소의 원인분석에 대한 실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으며,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대응방안 자료」, 2014.
- 권순국, “수입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무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창봉, 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 김창봉, 현화정,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및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5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pp.295-315.
- 김태인, 김석태, “한-EU FTA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사례 연구”, 「무역연구」, 제8권 제1호, 2012.
- 김희열, 광근재,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4호, 국제지역학회, 2012.

- 뉴시스, “부산세관, FTA원산지 표기위반 추징액 급증”, 2014.10.21.
- 박현희,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2.
- 배명렬, 박천일, “한국무역업계의 FTA 평가와 활용 제고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5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pp.249-273.
- 윤준웅, “FTA 원산지검증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석동, 이춘수,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교역성과에 관한 소고”, 「관세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5.
- 이영수, 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9,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이창숙, 김종철, “FTA 체결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2013, 한국통상정보학회, pp.467-490.
- 장근호, “FTA 특혜 원산지 검증제도: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 장근호, 정재완, “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2.
- 전준수, 조준영,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
- 정순태,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조화”,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
- 조미진, 김민성,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권 제20호, 2011.
- 조미진, 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활용현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 제3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1.
- 주간무역, “FTA 원산지 사후검증-수출기업에게 ‘발등의 불’”, 2013.10.4.
- 한덕수, “2014 주요무역동향지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 관세청 관심 제 2012-33호, 관세청 적부심사 제 2007-129호, 관세청 적부심사 제 2008-005호
- 한·미 협정문, 한·EU 협정문.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21 Feb., 2015.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kor_portal.html, 21 Feb., 2015.

국제원산지 정보원, <http://www.origin.or.kr/loginSrcv.do>, 21 Feb., 2015.

미국 세관, http://rulings.cbp.gov/HQ_545693, 21 Feb., 2015.

Brenton, Paul, Miriam Manchin, "Making EU Trade Agreements Work : The Role of Rules of Origin, CEPS Working Document No.183, March 2002.

Kawai, Masahiro and Ganeshan Wignaraja,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2009.

Yang-Ming Changa, Renfeng Xiao,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between Asymmetric Countries: Free Trade Areas (with rules of origin) vs. Customs Union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ume 33, February 2015.

ABSTRACT

A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on the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Yun, Jun Ung** · Lee, Chun Su***

Concerning post-verification which is after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cases such as Korea-EFTA and Korea-ASEAN, the growing trend of post-verifications was restricted and there was no active research concerning this; whereas with Korea-EU FTA which adopted indirect verification for post-verification, the demand for post-verification has been rising constantly each year; and for Korea-US FTA which has adopted direct verification, a new approach to post-verification research is needed as it began genuine post-verification regarding many national enterprises only after a year and a half since the agreement. This study will consider the counter measures that can be taken for post-verification, through case of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for export company regarding verification of FTA. Result of this case study regarding the determining a violation of origin, The main cause of the violation factors on the essential & general principles(goods wholly obtained, value added criteria) are lack of understanding agreement & manpower. but Violation of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 the origin certification are lack of advanced preparation and effected violation of principle of good faith. Finally, In this study help countermeasures of export company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type & implications deriving from verification of origin.

Key Words : Determination of Origin, Violation Factors, Origin Verification, Determining a Violation of Origin, Case Studies.

* This Paper is Founded on Master's thesis of Yun, Jun Ung

**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First Author)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